

#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788
------	-----

2023.07.03.  
기획경제위원회

### 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5월 30일, 임춘대 의원(찬성자 23명)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5일

다. 상정결과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】

-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(2023.07.03.) 상정, 질의 및 답변, 의결(수정안 가결)

#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임춘대 의원)

#### 2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소비자정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안건 심의·의결 후 위원회를 자동 해산하도록 하고,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며 심의사항 중 ‘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’로 대체 가능한 부분은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위원회는 안전 발생시 구성하고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함(안 제13조제4항).
-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함(안 제13조제5항).
-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평가와 시민, 소비자단체, 연구·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(안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).
- 위원회의 정기·임시회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(안 제16조제1항).

#### 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,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행 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와 시민, 소비자단체, 연구·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, 정기·임시회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됨.

##### 나.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현황

-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「소비자기본법」에 근거하여 「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」가 제정(1997)되었고, 2009년 「소비자보호법」이 「소비자기본법」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「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」(이하 ‘조례’)로 변경됨.
- 소비자정책위원회(이하 ‘소비자위원회’)는 ▶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·시행, ▶ 시행계획과 추진실적 평가, ▶ 조례와 규칙에 관한 평가, ▶ 결함 물품 등에 대한 권고 사실의 공표, ▶ 소비자단체 등의 재정적 지원을 심의하고 있음.
- 최근 5년간(2019 ~ 2022) 소비자위원회는 총 16회(매년 2회 ~ 3회)를 개최하였으나, 대부분 서면 심사(10회)로 진행됨.

## < 소비자정책위원회 >

○ 구 성

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, 소비자단체 대표(2명), 경제단체 대표(2명), 대학교수(2명), 언론인, 법조인,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 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.

○ 기 능

1. 정책 수립 2. 추진실적 평가 3. 조례 및 규칙에 관한 평가 4. 권고 사실의 공표
5. 재정적 지원 6.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

○ 개최 실적

구 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
위원회	2회 (1회 서면)	3회 (2회 서면)	3회 (1회 서면)	2회 (2회 서면)	3회 (3회 서면)	3회 (1회 서면)

※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부분 회의 개최 서면으로 진행

### 다. 위원회 비상설화와 관련 규정의 조정(안 제13조 ~ 안 제16조)

- 안 제13조는 소비자위원회 안전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하고(안 제13조제4항), 비상설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함.

- 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라 위촉위원과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(안 제13조 제5항)과 정기·임시회 관련 규정(안 제16조제1항)을 각각 삭제함.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③ (생략) ④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	제13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위원회 안전 발생 시 구성하고, 심의·의

현 행	개 정 안
<p>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고,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p> <p>⑥ (생략)</p>	<p>결 후 자동 해산한다.</p> <p>&lt; 삭제 &gt;</p> <p>⑤ (현행 제6항과 같음)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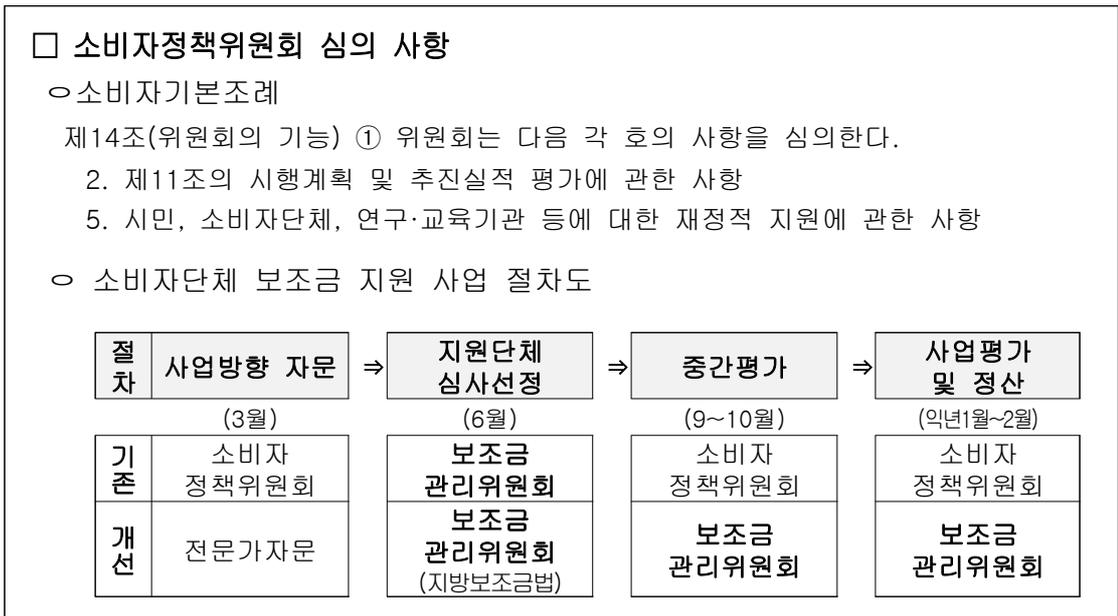
- 이는 소비자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전반을 재정비함으로써,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임.
-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평가,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삭제함.
- 2022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정책에 대한 지자체 시행계획을 시스템을 통해 일괄 취합·조정함에 따라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평가 심의사항을 삭제함(안 제14조제1항제2호).
-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 수행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함(안 제14조제1항제5호).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위원회 기능 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제11조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</p> <p>3. 4. (생략)</p>	<p>제14조(위원회 기능 등) ①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 삭제 &gt;</p> <p>2. 3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5. 시민, 소비자단체, 연구·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	< 삭제 >
6. (생략)	4. (현행 제6호와 같음)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- 소비자위원회 기능 중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체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위원회 간의 심의 중복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볼 수 있음.
- 그러나 정부의 소비자 정책 마스터플랜(3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)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소비자 정책의 기본방향과 사업목표, 연계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기능을 삭제하는 것은 소비자위원회의 기능을 형해화 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.

<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>



#### 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#### V. 수정안요지

##### 가. 수정이유

- 안 제14조의 심의사항 중 서울시의 소비자 정책의 기본방향과 사업 목표, 연계 사업들을 정하는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기능을 삭제하는 것은 소비자위원회의 기능을 형해화 할 수 있어 현행 대로 유지함.

##### 나. 수정안의 주요 내용

-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평가 관한 규정을 유지함(안 제14조제1항제2호).

#### VI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재석위원 7명, 전원찬성)

#### 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#### VIII. 기타 필요한 사항

#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788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7월 3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안 제14조의 심의사항 중 서울시의 소비자 정책의 기본방향과 사업 목표, 연계 사업들을 정하는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기능을 삭제하는 것은 소비자위원회의 기능을 형해화 할 수 있어 현행대로 유지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평가 관한 규정을 유지함(안 제14조제1항제2호).

#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를 제3호부터 제5호로 하고,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제11조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4조(위원회의 기능 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(생략) 2. 제11조의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. · 4. (생략) 5. 시민, 소비자단체, 연구·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	제14조(위원회의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< 삭제 > 2. · 3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 < 삭제 > 4. (현행 제6호와 같음)	제14조(위원회의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 제2호와 같음) 3. · 4. (현행과 같음) 5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

제1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.

제16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고,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 <p>⑤ <u>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u></p> <p>⑥ (생략)</p> <p>제14조(위원회의 기능 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시민, 소비자단체, 연구·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16조(회의) ① <u>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3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</u>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⑤ (현행 제6항과 같음)</p> <p>제14조(위원회의 기능 등) ①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5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회의) &lt;삭 제&gt;</p> <p>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